##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88 발의연월일: 2020. 8. 4.

발 의 자:서영교・인재근・이형석

김영배 · 김영호 · 양경숙

윤준병 · 김민석 · 조승래

이정문・맹성규・한병도

박홍근 · 양정숙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 신청 과정에서 많은 행정기관이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바, 이 중 각 개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중인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 본인으로 하여금직접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,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,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, 구비서류 제출·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·경제

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(안 제10조의2 신설).

###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)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·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경우 민원을 접수·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,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 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「전자정부법」 제39조

- 2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
- 3. 「관세법」 제116조
- 4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
- 5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6. 「부동산등기법」 제109조의2
- 7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
- 8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6조
- 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9조
- 10. 「건축법」 제32조
- 11. 「상업등기법」 제21조
- 1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종류를 국민에게 공표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37조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해당 정보의 위조·변조·훼손·유출 또는 오·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행정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

있다.

- ⑤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요구할 경우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에 관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.
- 1. 「전자정부법」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
- 2.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
- 3. 「주민등록법」 제35조제2호, 「도로교통법」 제137조제5항, 「여 권법」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 법
-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가 위조·변조·훼손·유출 또는 오·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에 관한 행정 정보의 요구방법, 해당 정보의 제공방법, 제공기준, 보안대책 및 실 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조의2(민원인의 요구에 의한
	본인정보 공동이용) ① 민원인
	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
	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
	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
	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
	는 경우 민원을 접수·처리하는
	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
	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
	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
	이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
	경우 민원을 접수·처리하는 기
	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
	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
	을 요구할 수 없으며, 행정정보
	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
	정보를 제공 받아 민원을 처리
	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
	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
	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
	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

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 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 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「전자정부법」 제39조
- 2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
- 3. 「관세법」 제116조
- 4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
- 5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<u>6. 「부동산등기법」 제109조의</u> <u>2</u>
- 7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
- 8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6조
- 9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9조
- 10. 「건축법」 제32조
- 11. 「상업등기법」 제21조
- 1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
   는 법률의 관련 규정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정

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종류를 국민에게 공표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37조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해당 정보의 위조·변조·훼손 ·유출 또는 오·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.

-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요구할 경우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정 보에 관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.
- 1. 「전자정부법」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
   2.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

-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
- 3. 「주민등록법」제35조제2호,
  「도로교통법」제137조제5항,
  「여권법」제23조의2 제2항
  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
  를 확인하는 방법
-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 받아 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 은 해당 정보가 위조·변조·훼 손·유출 또는 오·남용되지 아니 하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 런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 은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-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요구방법, 해당정보의 제공방법, 보안대책 및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